



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중간검사시기 등 변경안내

“해양환경관리법” 및 “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”이 2008. 1. 20부터 시행되었고, “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”이 2008. 1. 31 제정·시행됨에 따라 받아야 할 중간검사 종류 및 검사시기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

■ 중간검사의 시기

구분	종류	검사시기
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(1) 총톤수 50톤 미만의 유조선 (2) 여객선을 제외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유조선 외의 선박	제1종 중간	정기검사 후 2번째 검사 기준일 전 3개월부터 3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
	제1종 중간	정기검사 후 3번째 검사 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
나. 가목 외의 선박	제2종 중간	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(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일 제외)

문의사항 : 기관제도팀 (☎ 032-260-2289)